〈 창업희망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1. 본 서류는 '대외 공개용 정보공개서'로서, 정보공개서 원본에 서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모두 비공 개 처리하여, 대외 공개하기에 적합하도록 바꾼 것입니다.

원본을 확인하려는 경우 해당 가맹본부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u>가맹계약을 체결</u>하시려는 경우, 반드시 가맹본부에게서 <u>본 서류</u>
<u>가 아닌 정보공개서 원본을</u> 받아 보고, <u>14일의 숙고기간 동안</u>
<u>그 내용을 검토</u>해 보신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원본을 제공하지 않거나, 14일의 숙고 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 령하는 경우, 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 바에 해당됩니다.

3. 본 서류의 내용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변경 등록하거나, 비공개 대상 항목이 변경되는 등의 경우 수시로 변경될 수 있 습니다.

서울특별시장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20080100555 OPTIMA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 2008.10.07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 2024.11.07

http://www.optimacare.co.kr webmaster@optimacare.co.kr

[옵티마]

정 보 공 개 서

(주)라이프스타일프로젝트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24. 04. 29.

(주)라이프스타일프로젝트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 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 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 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 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 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 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24길 25, W동 2층(논현동)

전화: 1588-7656 팩스: 02-529-8033

담당부서 및 연락처 : CRM팀 / 070-8662-5515

목 차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4
п.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8
Ш.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1	2
IV.	가맹점사업	자의 부담 1	3
٧.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1	9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3	0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3	2
V Ⅲ .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3	4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5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 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한국공정거래위원회에 또는 시ㆍ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한국공정거래 위원회 또는 시ㆍ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ㆍ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 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 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 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한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영업표	.지	주 소				
	옵티마 <mark>외 1개</mark>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24길 25, W동				
	ᆸ디미 ㅗ	-1 1211	2층(논현동)				
㈜라이프스타일	법인 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	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프로젝트	2016.02.15		2016.03.14	김진호	1588-7656		02-529-8033
	법인등록번호	!등록번호 180111		사업자등록번	호	875-8	31-00271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당사의 최근 3년 동안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김진호 (주)라이프스타 일프로젝트	옵티마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24길 25, W동 2층(논현동)		
대표이사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	1588-7656	02-529-8033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당사는 최근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다른 기업(가맹사업 영업표지를 포함하여 가맹사업을 경영한 기업)을 인수·합병(다른 기업의 가맹 관련 사업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도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된 적이 있습니다.

인수·합병 여부	기업명	영업표지	인수 · 합병일	주 소	대표자
가맹본부가 다른 기업을 인수함	해당없음				
가맹본부가 다른 기업의 가맹사업 일부를 인수함	해당없음				
다른 기업에 가맹사업 일부를 인도함	해당없음				
다른 기업이 가맹본부를 합병함	㈜라이프스타 일프로젝트	옵티마	2022.12.23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24길 25, W동 2층(논현동)	김진호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앞으로 [옵티마]라 합니다)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옵티마	
상 호	OO 옵티마약국	
상표(서비스표)	OPTIMA	상표(서비스표) 등록번호: 41-0053803-0000
광 고	P. COPTIMA	광고나 상품 등에 사용되는 캐릭터
그 밖의 영업표지		

5.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 이익	당기 순이익
2021년	4,554,110	3,972,514	581,596	9,095,584	100,462	101,420
2022년	12,132,276	9,759,258	2,373,018	9,572,028	1,031,957	826,750
2023년	5,202,340	11,171,132	-5,968,792	13,462,784	-3,065,358	-3,529,246

그 근거자료는 별첨 1과 같습니다

1-1) 당사의 합병이전 ㈜옵티마케어의 21년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22년 합병으로 이후 ㈜옵티마케어 매출액은 없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 이익	당기 순이익
2021년	3,044,525	2,781,074	263,450	6,888,166	-1,592,955	-1,588,843

그 근거자료는 별첨 2와 같습니다

2)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22년 합병으로 23년 이후 매출액입니다.

당사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2-1) 당사의 합병이전 ㈜옵티마케어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22년 합병으로 이후 ㈜옵티마케어 매출액은 없습니다.

당사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당사에서 추정한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당사 전체 매출액의 41%입니다.]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괴러어버			사업경력				
관련여부	이름	현 직위	기간	직위	담당 업무		
가맹사업 관련 임원	김상민	사내이사	2012.05 ~ 현재	(주)라이프스타일프로 젝트	업무 총괄		
가맹사업 관련 임원	김진호	대표이사	2022.12 ~ 현재	(주)라이프스타일프로 젝트	업무 총괄		
가맹사업 관련 임원	이기돈	감사	2021.07 ~ 현재		감사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당사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	임원=	수(명)	직원수(명)	
Ala 	상근	비상근	역전구(8 <i>)</i>	
2023년 12월 31일	2	1	38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가맹사업을 경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	권리내용	등록 및 등록신청 여부(일자)	출원번호 및 등록번호	소유자 (등록신청자)	존속기간 만료일 (가맹본부의 사용기간)
옵티마 (상표권)	상표 사용 계약 내용에 따른 상품 판매, 대가 수령	1997.12.24. 출원 1999.3.2. 등록	출원 제41-1997 -0017348 등록 제41-0053803 -0000	㈜라이프스타 일프로젝트	2029.3.2.

당사는 법인합병으로 권리의 전부이전등록을 완료 하였습니다.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특허)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Ⅱ. 가맹본부의 [옵티마] 가맹사업 현황

1. [옵티마]를 시작한 날: 1999년 2월 10일

2. [옵티마] 연혁

가맹본부	ᅄᇬᄑᅚ	대표자의	가맹사업	즈티 보다스이 스케티
상호	영업표지	이름 경영 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주)옵티마케 어	옵티마케어	김재현	1999.2.10 ~ 2010.12.31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 14길 16
(주)옵티마케 어	옵티마	김재현	2011.1.1 ~ 2012.5.22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 14길 16
(주)옵티마케 어	옵티마	김재현 김상민	2012.5.23~2021.12.31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 14길 16
(주)옵티마케 어	옵티마	김상민	2021.12.31~2022.12.22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24길 25, W동 2층(논현동)
㈜라이프스타 일프로젝트	옵티마	김진호, 김상민	2022.12.23.~2023.02.13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24길 25, W동 2층(논현동)
㈜라이프스타 일프로젝트	옵티마	김진호	2023.02.14.~현재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24길 25, W동 2층(논현동)

3. [옵티마] 업종

영업표지	업종			
਼ ਈਜ਼ੀ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옵티마 	건강식품, 교육서비스	바이헬스, 에스린		

4. 최근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옵티마]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단위: 개)

TI CI	2021.12.31			2022.12.31			2023.12.31		
지역	전체	가맹점 수	직영점 수	전체	가맹점 수	직영점 수	전체	가맹점 수	직영점 수
전체	841	841	0	841	841	0	852	852	0
서울	236	236	0	233	233	0	235	235	0
부산	49	49	0	50	50	0	50	50	0
대구	41	41	0	41	41	0	43	43	0
인천	48	48	0	48	48	0	49	49	0
광주	21	21	0	21	21	0	21	21	0
대전	24	24	0	24	24	0	25	25	0

울산	16	16	0	16	16	0	16	16	0
경기	235	235	0	236	236	0	239	239	0
강원	28	28	0	28	28	0	28	28	0
충북	21	21	0	21	21	0	21	21	0
충남	14	14	0	14	14	0	15	15	0
전북	14	14	0	14	14	0	15	15	0
전남	26	26	0	26	26	0	26	26	0
경북	23	23	0	24	24	0	24	24	0
경남	25	25	0	25	25	0	25	25	0
제주	12	12	0	12	12	0	12	12	0
세종	8	8	0	8	8	0	8	8	0

5. 바로 전 3년간 [옵티마] 가맹점 수

(단위: 개)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말
2021	832	16	-	7	-	841
2022	841	7	_	7	-	841
2023	841	12	_	1	1	852

6. [옵티마]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당사는 [옵티마]외에도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 관계인이 경영하고 있는 가맹사업이 없습니다.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당사는 현재 옵티마약국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전체품목 중 물품의 일부를 공급 하고 있어 옵티마약국 가맹점사업자의 전체 연간평균 매출액을 추정할 수 있는 근 거자료가 없습니다.

		2023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						
지역	2023년 말 가맹점수	연간 평균	매출액	연간 평균 매출액(상한)		연간 평균 매출액(하한)		비고
	/ I 6 T I	연간 평균	면적	상한	면적	하한	면적	

		매출액	3.3m²당	3.3m²당	3.3m² 당	
전체	852					
서울	235	해당없음				
부산	50	해당없음				
대구	43	해당없음				
인천	49	해당없음				
광주	21	해당없음				
대전	25	해당없음				
울산	16	해당없음				
경기	239	해당없음				
강원	28	해당없음				
충북	21	해당없음				
충남	15	해당없음				
전북	15	해당없음				
전남	26	해당없음				
경북	24	해당없음				
경남	25	해당없음				
제주	12	해당없음				
세종	8	해당없음				

8. [옵티마]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옵티마]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2023	852	4682일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당사는 [옵티마] 가맹약국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지역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10. 광고 • 판촉 지출 내역

당사에서 [2023년]에 [옵티마]와 관련하여 광고비 및 판촉비로 사용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광고비 및 판촉비를 가맹점사업자와 분담하는 기준은 [28~29쪽]을 참고하십시오.

구분	수단	기간	지출 비용(단	단위: 천원, 부	가세 미포함)	비고
下正	구긴	기간	합계	가맹본부	가맹점	미프
합계				114,406	없음	
	소계			97,656	없	
광고	지면광고				(비공개)	
유파	기타광고 및 박람회등			(비공개)	(비공개)	
	간판외					
	소계			16,750	없음	
	방송협찬				(비공개)	
판촉	기타판촉 및 홍보물등			(비공개)	(비공개)	
	약봉투제작			(비공개)	(비공개)	
	종이쇼핑백				(비공개)	

11. 가맹금 예치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기업은행]에 예 치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치기관 상호 담당	지점 또는 부서	十二	전화번호
각 지역 기업은행 프린	<u>내</u> 차이즈 가맹금 예치담당자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24길 25, W동 2층	02-577-3955

자세한 예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준비서류:

- ① 가맹금 예치신청서
- ② 본인 신분증
- ③ 가맹본부와 계약한 프랜차이즈 가맹 계약서

귀하는 가맹금을 거주지 기업은행에 방문하여 [계약 체결 다음날까지 예치신청 하여야 합니다. [예치방법은 준비서류를 지참하여

각 지역 기업은행에서 소정서식(가맹금 예치 신청서)을 발부받아 작성하여 가맹금을 예치하면 됩니다.]

(예치 후 가맹금 예치증서를 발부 받으시면 됩니다.)

예치금 송금 후 귀하의 사업개시 시점 또는 계약체결 후 2개월

이 경과되면 예치금은 당사로 귀속 됩니다.

귀하는 또한 [기업은행]에서 발급한 예치증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아래 주의사항을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합니다.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예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 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 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 3. 2번의 가~다 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당사는 가맹금 예치제를 시행하고 있어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내역은 없습니다.

皿.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 지사의 시정조치 등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와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옵티마]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고
최초 가맹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기타 비용	가맹본부 또는 다른 업체	예치하지 않음	추정 금액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총계	[9,900]				
가입비	4,400	계약 체결 후 3 일 이내	영업 개시 이전 까지 계약 해지	가맹점 모집을 위해 소요된 실 제비용	반환시 당사에서 정한 기준의 위 약금을 공제
교육·훈련비	5,500	계약 체결 후 3 일 이내	영업 개시 이전 까지 계약 해지	가맹점 운영을 위해 필요한 교 육비	반환시 당사에서 정한 기준의 위 약금을 공제
개점행사비	0				당사는 개점행사 를 진행하고 있 지 않습니다.
보증금	0				당사는 보증금을 받고 있지 않습 니다.

2)당사는 보증금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의 자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금액(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합계	9,900
가입비	4,400
교육·훈련비	5,500
개점행사비	0
보증금	0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귀하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품의 품목은 [19]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면적 3.3㎡당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비고
총계		[4,850~7,170]				
옵티마 몰간판	㈜라이프스타 일프로젝트 협력업체 (협력업체)	50~70		설치 1일 이전	설치 전 계약취소	간판 개수 및 사이즈에 따라 다름
간판 설치	㈜라이프스타 일프로젝트 협력업체 (협력업체)	1,200~1,400		설치 1일 이전	공사 전 계약취소	간판 개수 및 사이즈에 따라 다름
간판 천갈이	㈜라이프스타 일프로젝트 협력업체 (협력업체)	600~700		설치 1일 이전	공사 전 계약취소	간판 개수 및 사이즈에 따라 다름
최초 공급 상품 비용		3,000~5,000		상품 공급 1일 이전	공급 전 주문 취소	주문 상품량에 따라 금액은 달라질 수 있음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 동안의 가맹점 운영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 주체	선정 기준
	담당자 배정 → 상담을 통하여 가맹희망자가 원하는 지역 파악 → 현장
당사 CRM팀	조사 등 시장 분석 → 최적의 입지 도출 → 가맹희망자에게 동의 여부를 구
(전화:070-8662-551	
5)	※ 가맹희망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새로운 입지를 정할 수 있으나 영업이 늦
	어지는데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추가로 부담할 수 있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 기준	계약・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관계법령에 따른 자격 소지자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이 아닐 것 만20세 이상일 것
종업원	관계법령에 따른 자격 소지자	만18세 이상일 것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 · 공급업체

[옵티마]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물품이 필요합니다. [물품의 상세 내역은 첨부한 카탈로그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 부담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특히 광고 분담금에 대한 세부 분담기준은 [28]쪽에 나와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상표사용료		해당없음				
리스료		해당없음				

광고 분담금	(주)라이프스타 일프로젝트	미정	별도 지정일	광고 미시행	광고 시행	
판촉 분담금	(주)라이프스타 일프로젝트	미정	별도 지정일	판촉 미시행	판촉 시행	
모바일상품권 수수료분담금		해당없음				
교육훈련비	(주)라이프스타 일프로젝트	실비	교육 실시 10일 이전	교육 미참가	교육 참가	교육 필요시 지급
간판류 임차료		해당없음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		해당없음	간판 변경 후 2일 이내			부득이한 경우 변경될 수 있으며, 교체비용은 당사자의 귀책사유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
영업지역 보장금		해당없음				
인테리어, 시설, 각종 기기의 교체.보수비 용		해당없음				
재고관리 비용		해당없음				
회계처리 비용		해당없음				
POS 사용료	(주)라이프스타 일프로젝트	해당없음				
지연이자	(주)라이프스타 일프로젝트	해당없음				
점포환경 개선비용		해당없음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의 (2023)년도 평균 규모는 다음 과 같습니다.

당사는 당사의 품목 중 가맹점사업자가 원하는 품목을 원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하고 있으며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당사는 귀하의 영업 상황에 대하여 별도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부담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재합니다)
-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금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총계	[]				
추가 교육비	협의하여 결정	교육 시작 7일 이전	교육 시작 1일 이전에 계약 해지		추가교육 필요시

-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 종료시 조치사항
 -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를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양수한 사업자(가맹본부) 와의 계약 관계 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관계를 탈퇴할 경우,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에 해당되므로 가맹점사업자는 남은 가맹계약 기간을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가맹점운영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식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이로 인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하여 이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수단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귀책사유 등을 감안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귀하가 운영하는 [옵티마]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귀하가 [(주)라이프 스타일프로젝트]에 지급해야 할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양수인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에 필요한 교육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보증금도 가맹본부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운영권 양도에 관한 자세한 절차는 가맹계약서 제35조 (가맹사업자의 영업양도 등) ①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가맹계약서 35조 ①항 전문내용)

① "을"은 제3자에게 본 계약상의 가맹약국운영권을 양도, 상속, 전대, 위탁경영, 담보제공 등을 할 수 없다.

단, "갑" 이 정한 기준(직계존비속, 부부간)에 따라 상속되는 경우는 1회에 한하여 본 계약서의 최초가입비의 지급의무는 면제된다.

다만, 상속 등에 따라 "갑"에게 초래된 행정적 실비 및 교육, 훈련비는 면제되지 아니한다.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가맹점사업자는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상호.간판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중단하고 이를 철거 내지 제거하여야 하며, 가맹본부가 제공한 설비, 전산시스템 등 영업관련 자산을 가맹본부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일정한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맹점사업자가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한 자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을 반품하고자 하는 경우, 물품의 재고량, 오.훼손 등 관리상태, 유통기한 등을 고려하고 일정범위 내 (10%~90%)에서 반품이 가능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당사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

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1) 귀하가 [옵티마]를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 ·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해야 할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귀하가 위 표의 거래형태에 강제로 기재된 물품을 지정된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에게 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 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 다른 품목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해당없음)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옵티마]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 · 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거래 강제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 1) 당사는 [옵티마]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요구 또는 권장하여 특정한 거래상대방이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대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 2) 당사는 [옵티마]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대가 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3. 상품 • 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 • 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 시 책임	비고
	해당 상품은	1회 위반: 구두 경고	
가스쿨 외 80여종	(주)라이프스타일프로젝트	2회 위반: 2회 이상 서면	
(별첨 참조)	로부터 공급받아	시정요구	
	판매하여야 함	3회 이상 위반: 계약 해지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 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고 있습니다.]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 · 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고객에 대해 상품·용역을 판매를 제한하는 방침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명	권장가격(단위: 원)	가격 통보 방법	비고
		월별로 홈페이지에	
가스쿨 외 80여종	별첨 참조	공지	2023.12월 기준
(별첨 참조)		또는 관리자를 통한	2023.12월 기단
		서면 공지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권장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당사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 · 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영업지역 제도 운영 여부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여부	
0	0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중절인 합중 급기	가맹본부	계열회사
약을 조제하여 판매하거나 건강식품을 판매하는 가맹사업	옵티마	해당 없음

2) 영업지역 설정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 기준	설정방법	
기존 가맹점 위치, 점포소재지 반경 100m	계약서에 영업지역 표시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 시 다음 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 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맹계약서 6조 4항 참조]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 (신규 점포 입점 가능)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역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 부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둘째,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셋째,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라이프스타일프로젝트' 영업표지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 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옵티마]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 • 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구분	유통업체명	주소	취급품목	가맹점과의 구분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 해당없음 사유로는 현재 가맹본부에서 온라인,오프라인 판매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위: %)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연도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3	100%	0%	0%	0%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단위: %)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3	100%	0%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 • 연장 • 종료 • 해지 • 수정

1) 가맹계약 및 갱신 기간

[옵티마]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이며, 가맹계약 갱신 시

계약기간은 [계약갱신일로부터] [1]년입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 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	기간(계약만료일: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 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	D-180 ~ D-90
®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금이나 물품대금 등 채무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7조 2항
○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 등을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7조 2항
○ 가맹사업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중요한 영업방침 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7조 2항
○ 계약해지 사유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7조 2항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당사가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약국의 표시 및 이전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3조
○ 영업표지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4조
○ 영업표지 변경에 따른 조치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5조 2항
○ 감독 및 시정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11조
○ 교육 훈련의 지원에 불참하는 경우	18조 1항
○ 실무 연수를 거부하는 경우	18조 3항
○ 회계자료 및 주요사항 통지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23조
○ 대금의 결제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26조
○ 개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문서 자료를 무단으로 유출하는 경우	29조 1항
○ 광고, 판촉 행사에 무단으로 불참하거나 규정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	30조, 31조
○ 물품대금의 담보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39조
○ 경업금지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13조
○ 가맹점의 귀책사유로 본 계약의 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개점이 불가	22.7.45
능한 경우	32조 1항
○ 영업 양도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35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다만,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아래의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통지 없이 계약서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즉시계약 해지 사유			
0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	시		
	된 경우	32조 3항		

o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 정지된 경우	32조 3항
o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32조 3항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u>다음 각 목의 어느</u>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 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32조 3항
o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32조 3항
o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32조 3항
ㅇ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32조 3항
o 가맹점사업자가 <u>뚜렷이</u>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 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u>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u>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32조 3항
ㅇ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32조 3항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당사는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게 서면

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비고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 야 하며, 가맹본부가 정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양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므이·CDM기르

[당사가 양도를 승인하면 양수인은 양도인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며 양수인은 교육비 및 기타 양도에 필요한 비용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양수인이 원할경우에는 당사는 양수인과 신규 가맹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사정이 있다하더라도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행사하게 하게 할 수 없으며, 상속 및 업무위탁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단, "갑" 이 정한 기준(직계존비속, 부부간)에 따라 상속되는 경우는 1회에 한하여 본 계약서의 최초가입비의 지급의무는 면제된다.

다만, 상속 등에 따라 "갑"에게 초래된 행정적 실비 및 교육, 훈련비는 면제되지 아니한다.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당사는 계약기간 동안 [영업지역 내에서] 귀하가 [옵티마]와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그러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경업허가 절차	비고
을 활용해 일반인에게 건강식품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경업허가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시장조사 포함, 30일 가량 소요) → 허가 여부 통지 → 완료	문의: CRM팀 (070-8662-5515)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옵티마]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개인 사정 등으로 영업을 불가피하게 중단하거나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 팀에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를 제한하고 있지 않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권장 종업원수	직접 근무 여부	대체 가능 인력	비고
-	-	관계 법령에서 정한 자격 소지자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를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리·감독 항목	감독 절차	빈도 및 시기	담당팀	비고
적정 재고 관리	담당자 매장 방문 → 재고 확인 → 가맹사업자 확인 → 완료	수시	CRM팀	
공급 물품 판매 관리	담당자 매장 방문 → 물품 판매 실태 확인 → 가맹사업자 확인 → 완료	수시	CRM팀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당사는 [옵티마 영업표지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전국 단위의]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와 나누어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78	광고	부담비율		ᆸᇊᅒᆀ	НЭ	
구분 	성격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분담 절차	비고	
	상품광고	광고비의 50%	총매출액 비율 따라 사정		대중매체 광고	
광고 전체 행사	상품광고 +가맹점 모집광고	광고비의 75%	광고비 25% 중 가맹점 총매출액 비율 따라 산정	광고 계획 공고 → 가맹점의 광고참여 여부 결정 → 가맹점부담액 제시(명세서)	명절, Day 명절, Day 이벤트 행사 (전국 행사)	
	가맹점 모집광고	전액 부담	없음			
개별 행사	행기	사에 따라 딜	:라짐	행사 계획 공고 → 가맹점부담액 제시 → 가맹점의 행사 참여 결정 → 행사 종료 후 최종 분담금 확정	월별 판촉 행사	

[전국단위의 광고일 경우 가맹점부담액은 광고비 중 일부를 광고시행 직전 분기의 각 가맹점사업자의 총매출액 비율에 따라 분담합니다. 지역 광고일 경우에는 해당 지역 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부담액 부분을 분담합니다.]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 • 판촉 활동

[개별 가맹점사업자가 스스로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와 함께 독자적으로 광고·판촉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특별하게 필요한 절차는 없습니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귀하는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 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자료 기타 가맹점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영업 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가맹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가맹점 개점 전에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 일방의 귀책사유로 가맹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가맹계약서 제8조 2항의 금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가맹점 개점 후에도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 일방의 책임으로 인하여 가맹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는 가맹 계약의 의무 위반으로 발생하는 권리를 행사할 시기를 선택할 수 있으며,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그 권리의 불 행사에 대한 신뢰를 입증하거나 제3자와 새로운 법률관계를 맺은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 계약의 특정한 사항에 대하여 손해배상에 대한 합의를 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사안에 국한되며, 다른 사안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되지는 않습니다.

가맹 계약으로 인하여 로열티, 물품대금, 손해배상금, 위약금 등을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 지급하거나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 그 지연이자는 가맹계약서 제34조 4항에 따릅니다.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의무에 관한 사항은 가맹계약서 제 34조 5항에 따릅니다.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과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내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합계		30일 내외	[14p 참조]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 접수 -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D-30	
사업 설명・상담	- 정보공개서 제공 - 가맹희망자 상담 -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D-29~28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신규 오픈시)	- 입지선정 -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필요시 실시	
최종 협의	- 개설 승인 - 계약서 제공	D-27~14	
가맹계약 체결	- 계약 체결	D-13	
가맹금 예치	- 기업은행에 가맹금 예치	D-13(1일)	
점포실측/설계	- 투자비 산출	D-12~10(3일)	
실내외 공사착수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D-9(1일)	
인테리어 공사	- 공사 실시	D-8(1일)	
교육 실시	- 점포운영교육 실시	D-7~4(3일)	
점포 개설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D-day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가맹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의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대화와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점포환경 개선을 요구하지 않으며, 가맹사업법 제12조2 규정 및 가맹점 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한 점포환경 개선의 경우에는 비용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가맹계약서 16조의 2 참조]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 해당없음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 지도를 다음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구 분	대상 및 내용	절 차	비용부담	비고
가맹본부 요청 시	상품구색,진열,판 매상황, 상품판매동향, 경영분석,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의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7]일 이내에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본부 부담	문의: CRM팀 (070-8662- 5515)
가맹점 사업자 요청 시	상품구색,진열,판 매상황, 상품판매동향, 경영분석,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의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점사업자 경영지도 요청 →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7]일 이내에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점 부담 (기맹금에 포함된 통상의 경영지도 비용을 초과한 부분에 한함)	문의: CRM팀 (070-8662- 5515)

4. 신용 제공 등 내역 : 해당없음

당사는 [옵티마] 가맹점사업자를 위하여 신용 제공 및 알선행위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 해당 없음

Ⅷ.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 • 훈련의 주요내용

[당사는 옵티마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요내용	교육방식	기한	비고
신규 교육	회사 소개 옵티마 제품 소개 옵티마 요법 교육	오프라인 강의 또는 온라인 동영상 강의	개점 전까지	필수 교육
보수 교육	제품/질환 교육 체질 맞춤 교육	오프라인 강의 또는 온라인 동영상 강의	수시	매년 필수적으로 이수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귀하가 [옵티마]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 과 같습니다.

구분	최소시간	비용(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비고
신규 교육	본사기준	-	최초 계약시 이수
보수 교육	40시간	실비	매년 필수적으로 이수

3. 교육・훈련의 주체

교육·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맹계약 당사자가 원하여 당사자 외 직원도 같이 교육을 받게 되면 인원 추가에 따라 비용도 추가됩니다.

4. 교육・훈련 불참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기한내 보수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계약서 18조에 따라 30일 내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본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가맹계약 해지 등의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당 사는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단위: 년, 개월)

2023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고

[당 사는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산정기준

(단위: 천워, 부가세 미포함)

2023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당 사는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 고객관리팀(070-8662-5515)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 리겠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 회 고객지원담당관실(044-200-4010) 또는 가맹거래과(help@ftc.go.kr)로 문의하십 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정보공개서는 당사의 홈페이지[http://www.optimacare.co.kr] 또는 **가맹사업정 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별첨1.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별첨2.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